

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(제8조 관련)

구분	기준
1.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
2.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영농기록의 작성·보관	영농기록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
3. 삭제 <2025. 6. 2.>	
4. 영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·판매단계의 유해물질(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) 잔류허용량의 안전기준	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. 농산물의 생산단계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. 농산물의 유통·판매단계: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